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3. 3 선고 2019가단13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선경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변론 종결2021. 1. 27.

판결 선고2021. 3. 3.

주 문

-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2. 2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2. 1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3. 기재 소매점에 관하여 2019. 2. 28.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채권관계

- 1)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2018. 1. 11. "C이 2016. 12.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97,000,000원을 2018. 3.부터 2023. 2.까지 6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2) 원고는 C에게 2018. 1. 29.부터 2018. 3. 29. 사이에 금원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3.경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11831호로 대여금 8,61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3. "C은 원고에게 8,618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의 재산관계

- 1) C은 2018. 6. 1.경 경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6.부터 2020.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2) 2019.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9. 4. 1.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3) C은 2018. 11. 23. 소외 H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경주시 I 소재 상가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어 H과 사이에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6.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인수하면서(H에게 권리금 1300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2017. 10. 19.부터 2020.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2019. 2. 28.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9, 10, 11, 12호증, 을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2. 12.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2. 28.자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그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그 가액 상당인 2천만 원의 지급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권리금 1,300만 원 상당의 지급 및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C이 사업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C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C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 및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그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 명의 대출금을 C이 사용함에 따라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고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으며, 피고는 선의이다.

3) C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현물로 귀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C이 무자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먼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2019. 2.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2.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0, 20호증이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던 시설의 상호와 피고가 2019. 2. 28. 신규 등록한 사업자 상호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별지3 관련).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별지1, 2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 18,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각 채무 외에도 카드사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에 C 소유의 물건이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C이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다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4. 9. 이 사건 상가 내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C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점유자로서 피고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가 내에 C 소유의 적극재산인 동산이 있었고 이를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직접 양수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그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소희

별지